
제18차 WCPFC 연례회의 참석 결과

2021. 12.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8차 중서부태평양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

* 영문명 : 18th Regular Session of the Commission

□ **회의 목적**

○ 중서부태평양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종 관리

□ **일시/장소** : '21.11.29.(월)~12.07.(화)/ 화상회의

□ **참석자**(약 300여명) : 한국, 미국, FFA, 일본 등 WCPFC 회원국 및 NGOs, 업계 등 대표

○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석자 : 원태훈 전문관

○ 정부 대표단

이름	기관 및 직위	비고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수석대표
오성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교체수석
김정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총회의장
나일강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교체수석
이미경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구사	
김성현	조업감시센터 주무관	
김태린	조업감시센터 전문관	

□ **논의 주제**

○ 열대 다랑어 보존조치 개정 논의

○ 기타 제안서 논의

- IUU 목록 교차 등재 제안서(EU)

- 용선 보존조치(CMM 2019-08) 개정 제안서(일본)

○ '22년 예산안 등 위원회 재정 논의

II 주요 내용

1 열대성 다랑어 보존조치(CMM 2020-01) 개정 논의

□ 패키지(package) 논의

- (논의 배경) 현행 보존조치가 '22년 2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 보존조치 개발 필요

* CMM 2019-04 제57항

'21년 2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20년 WCPFC17에서 현행 조치를 1년 연장하여 '22년 2월까지 효력 유지

- 주요 사안별* 국가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의견 조율을 위한 방편으로 패키지 논의 진행

* ⁽¹⁾관리 목표, ⁽²⁾FAD 금어기, ⁽³⁾공해 선망 노력, ⁽⁴⁾연승 관리 강화, ⁽⁵⁾연승 눈다랑어 어획 한도 등 다섯 개 요소를 동시 논의

- (국별 패키지 제안) 우리나라, 미국, 일본, FFA, PNA,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제안

- (우리나라 패키지 제안)

패키지 요소	제안 내용
관리 목표	전제 조업 기회가 증가한다면 유연한 입장
FAD 금어기	(16항) FAD 금어기 20% 감축(약 72일) (17항 및 각주1)* 유지
공해 선망 노력	(비SIDS 국가) 선망선 1척당 공해조업일수 30일 (SIDS) '18-'20년 공해조업수준 유지 권장
연승 관리 강화**	1. 공해 입출역 6시간 전 보고 2. 어획/노력량 데이터 기국에게 전자식 일일 보고
눈다랑어 어획 한도	현행 조치 표3에 나열된 국가들 1,500톤씩 증가

* 17항 : 키리바시, 필리핀 공해 FAD 금어기 면제

각주1 : PNA 선박 FAD 금어기 면제

** FFA 연승 MCS 강화 제안 : ⁽¹⁾공해 입출역 6시간 전 보고, ⁽²⁾'23년부터 어획/노력량 일일 보고, ⁽³⁾'23년까지 위원회 전자보고(EM) 프로그램 수립, ⁽⁴⁾눈다랑어 CDS 개발, ⁽⁵⁾'22년 전제 보존조치(CMM 2009-06) 개정 등 제안

- (타국 주요 패키지 제안)

국가	패키지 요소	제안 내용
FFA	관리 목표	현행 유지
	FAD 금어기	현행 유지(조치의 균형 유지를 위해 다른 요소 변화에 따라 조정)
	공해 선망 노력	1. 표2의 SIDS 면제 유지 2. 할당 프레임워크 기간 연장(28항)
	연승 관리 강화	FFA 제안(35bis~37quinquies)
	눈다랑어 어획 한도	1. 표3 유지 2. 눈다랑어 공해 할당 프레임워크 기간 연장(44항)
PNA	관리 목표	모든 목표 삭제
	FAD 금어기	1. 3개월 FAD 금어기 삭제 또는 감축 2. 각주1 및 FAD 정의 삭제 시 3개월 FAD 금어기 삭제
	공해 선망 노력	1. 표2의 SIDS 면제 유지 2. 할당 프레임워크 기간 연장(28항)
	연승 관리 강화	연승 관리 강화를 나중에 도입할 수 있으나, 관리 강화 전까지는 눈다랑어 한도 증가 반대
	눈다랑어 어획 한도	연승 VDS 등 수역기반(zone-based) 관리 도입 시에만 한도 증가 합의 가능
미국	관리 목표	협약수역 내 산란자원량 고갈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수역별 관리 도입 제안
	FAD 금어기	'22년까지 금어기 실행 후, 기국 조사를 위한 옵서버 보고서 제공 방안 개발 전까지 금어기 중지
	공해 선망 노력	아메리카 사모아 공해 선망 노력 면제 제안
	연승 관리 강화	FFA 제안 중 daily report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동의 가능
	눈다랑어 어획 한도	1. 표3에 나열한 국가들 3,000톤씩 증가 제안 2. FFA 제안(44항)은 공해와 함께 EEZ도 포함
일본	관리 목표	의견 없음
	FAD 금어기	현행 유지
	공해 선망 노력	미국 우려 수용 가능
	연승 관리 강화	추가 조치 반대
	눈다랑어 어획 한도	표3 : 현행 유지 39항 및 44항 : FFA 제안 찬성
대만	관리 목표	1. 눈/황다랑어 : 현행 유지 2. 가다랑어 : '12년 산란자원량 수준
	FAD 금어기	현행 유지
	공해 선망 노력	EU가 제안한 SIDS 공해 선망 노력 3,000일 제한 지지
	연승 관리 강화	FFA 제안 지지
	눈다랑어 어획 한도	미국 제안 지지

- (공해 선망 노력 증가) 우리나라는 비SIDS 국가의 공해 조업일수를 국별 선망선 1척 당 30일을 보장하도록 개정 제안
 - FFA, PNA, 미국, 일본 등 패키지 논의에 참여한 주요 국가들은 공해 선망 노력 증가는 현행 조치에 명시된 할당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진행을 선호하며 본 제안을 반대
 - 우리나라의 공해 선망 노력 증가안은 다른 회원국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패키지 논의에서 제외되며 무산

- (아메리카 사모아 면제) 미국은 다른 SIDS와 달리 아메리카 사모아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16항 각주1 및 제17항에 아메리카 사모아 포함 제안*
 - * 미-아메리카 사모아 용선 계약에 따라 아메리카 사모아에 하역하는 선박 대상으로 각주1 및 제17항 면제 제안
 - FFA, 일본 등 국가들은 아메리카 사모아의 제16항 면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아메리카 사모아 인근 EEZ로 적용 수역을 제한하고, 아메리카 사모아에 하역하는 비율(예를 들어 70~80%)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
 - PNA 국가들은 아메리카 사모아를 제17항에 포함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크게 반발
 - 미국은 아메리카 사모아가 각주1과 제17항 의무에서 면제되어도 위원회 전체에서 비중이 매우 작음을 강조하였고, FFA, 일본 등의 아메리카 사모아 인근 EEZ 및 하역 비율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 견지
 -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미국이 제안을 철회하며 논의 종료

- (미국 옵서버 보고서 제안) 미국은 FAD 금어기 중 발생한 불이행 사안에 대한 기국 조사를 위해 필수인 옵서버 보고서 제공이 개선되지 않으면 FAD 금어기를 중단하는 패키지안 제출

- 미국, 우리나라 등 회원국은 오랜 기간 옵서버 보고서 부재로 인한 기국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미국은 이번 패키지 논의를 통해 본 사안 해결을 도모
- FFA는 옵서버 보고서 문제는 기국과 옵서버 제공자 사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생긴 문제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본 제안에 반대
- **(연승 수역기반(zone-based) 관리)** FFA는 자국 수역 내 연승 VDS* 실행을 알리고 본 내용을 보존조치에 명시 제안
 - * 선박조업일수제도(Vessel Day Scheme, VDS)
 - 본 제안은 연승 눈다랑어 어획 한도 증가와 맞물려 FFA가 연승 MCS 강화 및 FAD 금어기 축소를 함께 엮은 패키지 요소이며,
 - 일본은 FFA의 연승 수역기반 관리 제안에 대해 논의 및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며 본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 우리나라, 미국 등 국가는 본 연승 VDS의 작동방식,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반대
- **(연승 MCS 강화)** FFA의 MCS 강화 제안에 중국, 대만 등 국가는 현실적 실행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반대하였고,
 - 우리나라는 공해 입출역 보고, 노력량/어획량 일일 보고 등에서 수용 의지를 보였으나, 전자감시(EM) 및 눈다랑어 CDS 등에 관한 FFA 제안에는 반대
 - 본 사안에 합의가 나지 않아 연승 눈다랑어 어획 한도 증가도 무산
- **(논의 결과)** 패키지 논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현행 조치 2년 연장* 결정
 - * 개정 보존조치는 '24년 2월 10일까지 효력 유지

2 기타 보존관리조치 개정안

□ 미국 - 상어 보존조치(CMM 2019-04) 개정안

- (논의 배경) 미국은 상어 부수어획 경감 조치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조치를 두 개 모두 의무로 개정 제안
 - * CMM 2019-04 제14항
 - 다랑어 및 새치류를 조업하는 연승선은 다음 두 개 조치 중 하나를 선택
 - (1) 와이어 트레이스(wire trace)를 아릿줄 또는 리더(leader)로 이용 금지
 - (2) 샤크라인(shark line) 이용 금지
- (논의 내용) 본 미국 제안에 FFA 회원국은 상어 부수어획 경감을 위해 효과적인 조치라 주장하며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 EU는 본 사안에 대해 옵서버 데이터 등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으며, 어업 및 수역별 부수어획 영향이 다름을 지적하며 내년 SC18 분석 후 논의를 주장하였고,
 - 중국, 일본 등 국가도 EU의 주장에 동의하며 회원국 간 이견 발생
- (논의 결과) 합의 도출 실패로 개정안 미채택

□ EU - IUU 목록 보존관리조치(CMM 2019-07) 개정안

- (논의 배경) EU는 WCPFC에 IUU 교차등재(cross-listing) 제도를 도입하기를 제안
- (논의 내용)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국가는 본 제안서의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며 IUU 교차등재 도입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 FFA 등 SIDS 국가들은 행정부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다른 기구들의 선박들까지 모두 처리하기가 어려움을 설명하며 제안서 반대
- (논의 결과) 합의 도출 실패로 개정안 미채택

□ NC 의장 -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조치(CMM 2020-02) 개정안

- (논의 배경) 지난 10월 개최된 제17차 북방위원회(NC17)는 위원회에게 태평양 참다랑어(PBF) 어획 한도 증가를 포함한 PBF 보존조치 개정안 채택 권고
- (논의 내용) 일본, 우리나라, 대만 등 NC 회원국은 본 개정안을 지지 하였으나,
 - FFA 회원국은 PBF 자원평가 및 증가 시나리오에 이용한 과학 분석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PBF 어획 증가에 반대
- (논의 결과) 일본과 FFA의 양자 협의를 통해 합의 도출 및 개정안 채택

□ 일본 - 용선 보존조치(CMM 2018-08) 개정안

- (논의 배경) 일본은 정보 요구사항에 용선의 조업 수역 정보를 추가하고, 기국 및 사무국에 더불어 과학서비스제공자(SSP)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
- (논의 결과) 개정안 채택

3 기타 논의

□ 이행감시체제(CMS*)

* Compliance Monitoring System : 국별 이행 평가 시스템. TCC에서 이행감시 보고서(Compliance Monitoring Report, CMR) 작성 논의를 통해 진행

- (논의 배경) FFA 및 PNA 등 국가는 현 WCPFC 이행 평가 체제에 SIDS의 효과적인 참여가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는 SIDS에 대한 불공평한 부담이라 주장하며 현 CMS 유지를 거부
- (논의 내용) 우리나라, 미국 등 국가는 CMS 부재는 용납 불가함을 밝히고, 올해 시간 부족으로 관련 논의를 하지 못한 관계상 현 체

제를 1년 연장하고 내년 관련 조치 개정을 제안

- 하지만 FFA 등은 현 체제 유지를 강하게 반대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 이에 호주가 내년 TCC부터 CMS 개선*을 시작하여 연례회의에서 채택 후, '21~'22년 CMR을 모두 '23년 TCC에서 진행**하기를 제안

* audit point, risk-based assessment 개발 등

** '22년 TCC18 중 CMR은 진행하지 않지만 annual report part 1, 2는 모두 제출 필요

○ (논의 결과) 호주 제안 채택 및 위원회는 '22년 CMS 개선을 우선

□ IUU 목록

○ 현행 IUU 목록 3척* 유지

* 현행 WCPFC IUU 목록

선명	국적(이전 국적)
Neptune	unknown(프랑스)
Fu Lien No1	unknown(조지아)
Yu Fong 168	unknown(대만)

□ 차기 회의

○ 2022년 회의 개최지(예정)

회의명	개최지(예정)	비고
과학위원회(SC18)	통가	과학자-관리자 협의체 동시 개최
이행위원회(TCC18)	마이크로네시아	-
북방위원회(NC18)	일본	-
연례회의(WCPFC19)	베트남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회의 개최 여부 결정